

1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올해부터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*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)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한편,
 - '23. 12. 31.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
* (5개 소득) 간이 ①근로·②사업·③기타소득, ④양도소득, ⑤퇴직소득

2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?
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- 다만, 그 외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100만원을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.

<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 >

- ① 근로소득 = 총급여액 - (총급여액 × 근로소득공제)
- ② 사업소득 = 지급액 - (지급액 × 업종별 단순경비율[타가])
- ③ 기타소득 = 지급액 - (지급액 × 의제필요경비율)
- ④ 양도소득 = 양도소득금액(음수는 0으로 보며, 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)
 - * 부동산·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(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) 기준이며, 주식은 제외
- ⑤ 퇴직소득 = 과세대상 퇴직급여

3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?

- 아닙니다. '24년 상반기(1~6월)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,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.

4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?

- '24년 상반기 소득으로만 산정했고, 지급명세서가 수정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확정금액은 아닙니다.

5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?

- 소득발생처·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이 확인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(모바일) 경로에 따라 조회 가능합니다.

<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경로 >

[간이 근로·사업·기타소득]

- (홈택스) 나의 홈택스 > 소득·연말정산 > (일용·간이·용역) 본인 소득내역 확인
- (모바일) 전체메뉴 > 지급명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 > (일용·간이·용역) 소득자료 제출 > (일용·간이·용역)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

[퇴직소득]

- (홈택스) 나의 홈택스 > 소득·연말정산 > 지급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 내역
- (모바일) My 홈택스 > 연말정산간소화·지급명세서 >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조회

[양도소득]

- (홈택스) 세금신고 > 전자신고 결과조회 > 세목을 "양도소득세"로 조회
- (모바일) 전체메뉴 > 세금신고 > 신고서 조회/삭제/부속서류 > 전자신고 결과조회 > 세목을 "양도소득세"로 조회

6

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 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?

- 아닙니다.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,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.
-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,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.

7

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?

-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.

8

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?

-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 받아,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후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쳐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.